

의안번호	2209775
의 퇴 인	위성곤의원
회 답 일	2025.5.14.
추계번호	25D2256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의4제1항 (구급활동착용기록 장치의 사용 등)	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구급활동 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·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(이하 “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”라 한다)을 사용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23조의4제5항 (구급활동착용기록 장치의 사용 등)	소방청장은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·음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조의4제1항 (구급활동착용기록 장치의 사용 등)	·미대상 구급활동을 위하여 이미 사용 중인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
2	안 제23조의4제5항 (구급활동착용기록 장치의 사용 등)	·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구급활동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·운영(안 제23조의4제5항)
 -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·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(Information Strategy Planning) 수립, 서버, 프로그램 구매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소방청에 따르면, 19개 지방소방본부별로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 등의 자료를 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, 하나의 시스템에 저장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
- 따라서 개정안에서 규정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소방청장이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구급활동기록장치의 영상 및 음성 자료의 용량, 해당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버의 규모, 프로그램의 종류,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소방청¹⁾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구급대원은 총 14,212명이고, 구급출동건수는 1,995천건, 이송인원은 2,017천명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

1) 소방청의 '119구조구급활동 실적보고'와 「구급서비스 통계연보」 참고